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51회 제2차 정례회 (2021. 12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 진흥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1-99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6일(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7일(수)

2. 제출사유

구민에게 일상적인 체력증진 목적의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선수인력을 통한 전문 체육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 변경
- 나. 조례의 입법목적 명확화(안 제1조)
- 다. “체육”활동의 범위 명확화 및 조문 정비(안 제2조)
- 라.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규정 정비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: 2021. 8. 12. ~ 9. 1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개정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기존의 생활체육 분야를 넘어 체육 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명 변경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- 지난 2016년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가 강화되고, 이로 인해 과거에는 주로 생활체육 분야의 육성과 지원에 국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체육활동 전반으로 확대되는 최근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그에 필요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”로 변경하고 있음.
- 안 제1조(목적)는 근거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2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조의 명칭을 “생활체육의 육성”에서 “체육진흥 시책과 권장”으로 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며,
- 안 제12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지원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. 특히, 제9호를 신설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 체육인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검토결과 근거법인 “국민체육진흥법”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남이 없고 각 개정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【참고자료】

국민체육진흥법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 시책의 수립 등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51회 제2차 정례회 (2021. 12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1-132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6일(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7일(수)

2. 제출사유

새로 조성되는 망원 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을 구립 체육시설 항목으로 추가하고 동 시설의 개인 사용료 등의 범위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구립 체육시설 항목 신설(안 별표 1)
- 나. 개인사용료의 범위 신설(안 별표 2)
- 다. 전용사용료의 범위 신설(안 별표 3)

4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: 2021. 10. 15. ~ 11.4.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: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(원안 동의)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 개정안은 올 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망원동 소재 “망원 우수지 소프트 테니스장”을 구립 체육시설 항목에 편입하고,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범위를 정하고자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조례의 별표 1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” 항목에 “망원 우수지 소프트 테니스장”을 추가하고,

 - 조례의 별표 2 “개인 사용료의 범위”에 동 시설 사용료의 범위를 10,000원 ~ 18,000원으로 정하고 있음. 책정된 사용료의 범위는 동종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망원 나들목 테니스장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고 2021년 9월 30일 개최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용료 책정이라고 판단됨.

 - 이와 관련하여 함께 개정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보면 동 시설의 주간 사용 요금기준을 10,000으로 정하고 있음(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 테니스장의 주간 사용요금은 12,000원임)

 - 또한, 조례의 별표 3 “전용사용료의 범위” 역시 인근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, 적절한 사용료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